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382
-----------	------

2016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9일, 김생환 의원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23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6년 9월 7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생환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시설 불허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며,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활동 및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불허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함(안 제6조).
- 다.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명시함(안 제8조~제9조, 안 별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김생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82호로 발의되어 2016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우리사회는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체육시설의 부족과 비싼 사용료로 인하여 공공재인 학교시설의 개방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시설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제1조) 학교장의 허가로(제4조)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조).
- 그러나, 시민이 학교시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시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설개방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학교시설 사용료도 타 시·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5배 높아 사용료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붙임1 참조).

[표-1] 학교사용신청 불허건수 현황

(대상기간 : 2014.1.~2016.7.)

시설명	2014			2015			2016		
	사용 신청 건수	불허 건수	불허 비율	사용 신청 건수	불허 건수	불허 비율	사용 신청 건수	불허 건수	불허 비율
교실	1,997	83	4.2%	1,535	69	4.5%	713	29	4.1%
체육관	4,413	658	14.9%	3,494	372	10.6%	2,165	214	9.9%
운동장	9,395	2,128	22.7%	7,668	1,629	21.2%	4,436	560	12.6%
기타	733	7	1.0%	606	6	1.0%	317	4	1.3%
계	16,538	2,876	17.4%	13,303	2,076	15.6%	7,631	807	10.6%

- 특히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비협조로 인한 미개방의 문제, 사용료 감면 범위의 재량권 부여로 인한 혼란(예를 들어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70~80% 감면), 샤워시설·보관창고·화장실 사용시의 사용료 징수 문제 등 현행 조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학교장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학교시설을 개방할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는 바,

학교현장의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1) 사용허가 불허시 서면 제출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용자가 서울시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하거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고, 해당학교에서는 사용신청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사용가능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을 불허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사용신청자는 학교측의 사용불가 통지에 대해 별도로 해당학교에 그 사유를 문의해야 하는 바,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 및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불허사유를 서면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시설의 자의적 미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학교시설사용

승인 여부가 문자를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되므로1), 서울시교육청에 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도 불허 사유를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시설사용료 조정에 대한 검토(안 제8조 및 별표)

○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학교 시설 사용자가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내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90㎡를 기준으로 6,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20,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조례 제7조, 별표2)).

여기에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의 70%에서 8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조례 제8조제1항7호, 동 조 제2항).

○ 한편,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체육관 사용에 있어 면적기준을 360㎡미만, 360㎡이상 720㎡미만, 그리고 720㎡이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시간당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용불가시 : "학교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용가능시 : "학교시설물 사용승인처리 되었습니다. 금액은 000원입니다. 7일 이내 사용료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계좌는000-00-000000입니다. 미입금시 신청접수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류시 : "[예약번호] 시설예약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빠른 시간내에 가능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 시설이용안내 중 이용안내 참조(<http://crs.sen.go.kr/>))

2)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3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기준
일반교실	10,000	20,000	1시간, 1실
체육관	6,000	20,000	1시간, 90㎡
운동장	일반	50,000	1시간
	인조잔디(천연잔디포함)	100,000	
그밖에 학교시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표-2] 체육관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체육관 사용면적	일시사용			장기사용			
	현재기준	개정안	차이	현재기준 (80%)	개정안 (60%)	차이	
정규교과 X외교과	360㎡미만	48,000	20,000	△28,000 (△58%)	9,600	8,000	△1,600 (△17%)
	360㎡이상 720㎡미만	72,000	30,000	△42,000 (△58%)	14,400	12,000	△2,400 (△17%)
	720㎡이상	96,000	40,000	△56,000 (△58%)	19,200	16,000	△3,200 (△17%)
외교과	360㎡미만	48,000	24,000	△24,000 (△50%)	9,600	9,600	동일
	360㎡이상 720㎡미만	72,000	36,000	△36,000 (△50%)	14,400	14,400	동일
	720㎡이상	96,000	48,000	△48,000 (△50%)	19,200	19,200	동일

※ 사용료 세부 산출은 [붙임2] 참조.

○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생활체육·평생교육으로 체육관을 일시사용(1회 2시간 사용)할 경우 현재 기준보다 사용료가 50%~58% 인하된 20,000원~40,000원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경우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보다 50% 인하된 24,000원~48,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장기사용(1회 2시간 사용)할 경우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60%의 감면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 중 최대 감면률 80%를 적용할 경우보다 17%의 사용료가 절감된 8,000원~16,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냉난방 가동시에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더라도 현재 최대 감면률 80%를 적용했을 경우와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사용료 조정에 대한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기준과 비교했을 때 감면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회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사용료를 동 개정조례안의 기준보다 5,000원 인상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교육재정관-17286).

- 그러나 교육청이 제안한 사용료의 경우 현행 기준 중 최소 감면률인 70%를 감면했을 경우보다는 저렴해지지만, 최대 감면률인 80%를 감면했을 경우보다는 비싸지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현재 80%의 감면률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사용료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학교시설의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붙임1 참조).

- 다만 학교시설 개방의 주체가 학교라는 측면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사용료 인하가 시설 개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급학교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장기사용시 체육관 사용료 비교

(단위 : 원)

체육관 사용면적	현재기준 (80%)	개정안		교육청(안)		
		사용료	차이	사용료	차이	
포기방O	360㎡미만	9,600	8,000	△1,600 (△17%)	12,000	2,400 (25%)
	360㎡이상 720㎡미만	14,400	12,000	△2,400 (△17%)	16,000	1,600 (11%)
	720㎡이상	19,200	16,000	△3,200 (△17%)	20,000	800 (4%)
포기방O	360㎡미만	9,600	9,600	동일	14,400	4,800 (50%)
	360㎡이상 720㎡미만	14,400	14,400	동일	19,200	4,800 (33%)
	720㎡이상	19,200	19,200	동일	24,000	4,800 (25%)

※ 사용료 세부 산출은 [붙임2] 참조.

3) 시설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변경(안 9조)

-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현행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전액면제, 100분의 60 감면, 100분의 50 감면 그리고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른 감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장은 동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학교 시설 사용료 감면률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은 시설이용자와 학교장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동일조건 하에서는 학교별 사용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률을 통일되게 규정한 것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기타

-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시설 사용신청자에게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조례안 [서식2]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대장을 비치 및 기록 보존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산출 기초 및 허가사항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 또한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학교장에게 [별표]의 사용료 이외의 일체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은 학교시설 사용 요금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시설사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을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별지 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 서식 2]”를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서식 2]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서식 3]”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전액면제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마.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률을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로 한다.

별표 중 “제3조 및 제7조” 를 “제4조 및 제8조” 로 하고, 학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명		생활체육·평생교육		일반·행사	비 고
일	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	육 관	360㎡미만	1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동장	일 반	20,000		50,000	1시간
	인 조 잔 디 (천 연 잔 디 포 함)	40,000		100,000	
샤 설	위 시	30,000		30,000	1개월
창 고 (물 품 보 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

별지 중 “[별지 서식 1]” 을 “[서식 1]” 로 하고, [별지 서식 1] 중 “제11조” 를 “제12조” 로, “제4조” 를 “제5조” 로 하며, [서식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서식 2]” 를 “[서식 3]” 으로 한다.

【서식 2】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 인원				
사용료 (산출기초 포함)				
기 타				
<p>위 기재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사용 허가자 : _____ 학교장 _____(인)</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조(사용료 징수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p>제4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5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6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 서식 2]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용료) ① ~ ② (생략)</p> <p>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④ <u>삭제(2102.03.08.)</u></p>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u></p> <p>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다만, 화장실은 제외한다) <p>제5조(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불허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u></p> <p>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서식 1]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서식 2]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서식 3]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u>이 경우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일 수 있다.</u></p> <p>④ <u>학교장은 별표의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u></p>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가 사용하거나,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5.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6. 평생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7.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호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 제6호 및 제7호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전액면제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60 감면

가. 학교가 소재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라.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마. 해당 학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학교장과 사용기관의 협의에 따라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 자격검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률을 적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생략)

제12조(준용)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생략)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3조 및 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행 사	기 준
일 반 교 실	10,000	20,000	1시간 1실
체 육 관	6,000	20,000	1시간 90㎡
운 일 반	20,000	50,000	1시간
동 인 조 잔 디 장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신설>			
<신설>			
그 밖 에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청각 실, 컴퓨터실, 수 영장, 농구장, 테 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사 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결정		

【별지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현행과 같
음)

제13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학교시설 사용료(제4조 및 제8조 관련)

【단위: 원, 기준: 1시간】

시 설 명	생활체육· 평생교육	일반· 행사	비 고
일 반 교 실	10,000	20,000	냉난방
체 육 관	360㎡미만	10,000	4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50,000
	720㎡이상	20,000	60,000
운 일 반	20,000	50,000	1시간
동 인 조 잔 디 장 (천연잔디포함)	40,000	100,000	
샤 위 시 설	30,000		1개월
창고(물품보관)	30,000		
그 밖 의 학 교 시 설 (특별교실, 시 청각실, 컴퓨터 실, 수영장, 농 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 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		

※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
함.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 인원				
기 타				
<p>「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 조례」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 지킬 것을 서약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 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학교장 귀하</p>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 인원				
기 타				
<p>「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 조례」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의 규정 지킬 것을 서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하여 위와 같이 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 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학교장 귀하</p>				

【서식 2】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명		전화	
	주소		FAX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 인원				
사용료 (산출기초 포함)				
기 타				
<p>위 기재내용과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사용 허가자 : _____ 학교장 _____ (인)</p>				

【서식 3】 (현행과 같음)

<신설>

【별지 서식 2】 (생략)